對 外 秘

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

2018. 6. 5. 기획조정실

I. 정치권

1. 청와대

▣ [대외적] 입장 표명 자제

☑ "여야, 판결 존중하지만…온도차, 청, 말 아껴"(뉴데일리 보도 내용)
▶ "…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. **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동향을 파악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**이다…"

▣ [대내적]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

- 1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·전달되었음
- 2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봄
- 3판결 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

2. 여야 각 당

가. 개요

▣ 원칙적으로 '판결 존중' 입장 최우선 표명

▣ 각론에 있어서 '온도차'

- 새누리당은 환영, 민주당은 다소 우려

나. 새누리당

▣ 대변인실 공식 논평

- 1판결 존중
- 2노사 현장에서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노사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
- 3통상임금의 **소급 적용과 관련**해서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 상태를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은 **합리성이 있다**고 평가

▣ 소속 의원 반응

☑ 김성태 의원[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]
▶ 근로자 임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판결
▶ 재계 부담 가중 우려
☑ 이종훈 의원
▶ 이번 판결은 노사 자율 영역을 상당부분 인정했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을 남겼다.
▶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.
☑ 이완영 의원
▶ 대법원이 매우 충실하게 검토했다. 입법 개정이 필요없다.
▶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노사분규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

다. 민주당

▣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논평

- 1판결 존중
- 2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당연한 결과
- 3다만, **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추가 임금 청구가 어렵다는 부분**에 대해서는 **현실을 도외시**한 것
- 4혼란과 분쟁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

▣ 소속 의원 반응

☑ 홍영표 의원
▶ 대법원 판결은 논란 소지 있다.

▶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수당, 격려금, 인센티브, 복리후생비 일부(비고정)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.
▶ 판결에 모든 복리후생이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.
▶ 입법 논의과정에서 각 사안별로 다양한 사례를 종합할 계획

3. 기타

▣ 정의당

- 통상임금에 대한 **명확한 기준을 제시**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
- **기업에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**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크게 아쉬움

▣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

- 노사 간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,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노사가 현명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

II. 재계

1. 개요

▣ 아래와 같은 대외적·공식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각자의 셈법에 몰두

- ①임금 추가 부담으로 인해 **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** 표현
- ②다만, **신의칙에 의한 소급 청구가 제한되는 예외**를 인정한 것에 대해 **다행스러움을 표시**하기도 함

2. 경제인단체별 입장

▣ 경총(한국경영자총협회)

- 25년간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**우려**
-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**유감**

▣ 전경련(전국경제인연합회)

- 노동비용이 급증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**우려**
- 일자리 창출에도 **부정적 영향**을 미칠 것

▣ **중소기업중앙회**

- 정부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법률 제도에 대한 **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**

▣ **기타**

- **한국중견기업연합회:** 인건비 부담 증가가 유동성 악화로 이어져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지는 중견기업이 속출할 것
- **한국경제연구원:** 투자가 위축될 것에 관한 우려를 표명

3. 개별 기업별 입장

▣ **대기업**

-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
  - 이미 **상당수 기업은 연봉제로 전환**
  -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**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**
- 상여금 많은 현대자동차, 현대중공업은 큰 영향 예상
- 연봉제로 전환한 삼성 그룹 계열사들은 작은 영향 예상

▣ **중소기업**

- 대기업보다 당혹해하는 분위기
  - 인력을 뽑기가 쉽지 않아 **야근과 잔업이 많을 수밖에 없어** 인건비 부담이 더 큼
  - **대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**시킬 것 걱정

▣ **자동차업계**

- 잔업이나 휴일 근로가 많아 인건비 상승에 부담

- **현대자동차**: 인건비 증가 폭이 1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
- **한국GM**: 본사의 향후 행보가 문제이고 한국 철수설이 불거질까 우려

▣ **제조업계**

● <u>인건비 부담이 많은</u> 제조업계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

▣ **기타**

● **증권업계**: 국내 증시에 부담 커질 것

● **식품업계**: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함

III. 노동계

1. 개요

▣ **1정기상여금이 포함되었다는 원칙을 상당히 중시하며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**

▣ **2과거 부분 청구를 배제할 여지를 둔 것에 대하여는 우려**

2. 한국노총

▣ **1대체로 환영**

▣ **2복리후생비 부분이 제외된 것은 유감이고, 이 부분은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의구심을 제기**

● 과거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임금 이분설로 되돌아 간 것

3. 민주노총

▣ **1대체로 환영**

● 당연한 판결,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

●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

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, 포괄역산제·변칙적 연봉제 등 또 다른 왜곡된 임금 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함

▣ **②신의칙 적용 여지를 둔 것은 불만**

●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

Ⅳ. 언론계

1. 개요

▣ **각 언론사들은 대체로 "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은 포함"을 헤드라인으로 하고, 다소 중립적인 사실 보도가 주류임**

● 판결에 관한 "한 줄 평가"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
▣ **판결 선고 직후에는 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성향 언론을 막론하고 대체로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평가하는 언론사가 많았음**

▣ **시간이 지나면서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판결로 평가하는 언론사가 늘어남**

● "내 봉급은 얼마나 늘어나나?"라는 식의 다소 수월한 방식의 향후 전망성 보도가 많아짐

2. 보수 성향 언론

▣ **균형감 있는 판결 또는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로 평가**

▣ **조선일보**

● [사설] "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반영해 임금 체계 개편 서두르라"

- "...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..."

▣ **동아일보**

● [사설] "통상임금 대법 판결, 후유증 줄일 법 정비 서둘러야"

- "...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(算入)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....앞으로 기업 부담은 커지게 됐다...정부와 국회는 노사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 방안을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..."

3. 진보 성향 언론

▣ **노동계에 유리한 판결로 보아 환영하는 경향이 강하면서도, 예외 인정에 대하여 우려**

▣ **경향신문**

● [사설] "통상임금 판결 노동정책 전환 계기 삼아야"

- "...통상임금에 대한 이번 판결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치를 사법부가 법적으로 판단한 것일 뿐이다..."

▣ **한겨레**

● [사설] "통상임금 대법 판결, 장시간·저임 노동 해소 계기 되길"

- "...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은 평가할 만하다. 하지만 그를 근거로 추가임금은 사실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지나치게 기업 쪽만 배려한 인상이 짙다..."

V. 기타

▣ **온라인 동향**

● 판결 선고 직후에 "대법원 판결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다"라는 트윗들이 많이 유포되었고, 그것이 이후에도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였음

☑ 한겨레/[속보] 대법원이 "통상임금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"라고 판결했습니다. twitter

☑ JTBC 뉴스/[속보] 대법 "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" twitter 2시간전39
☑ 오마이뉴스/"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" 노동계 손 들어준 대법원 http://t.co/Y7hdVSMyhY twitter
☑ YTN/[속보] 대법원 "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" 판단 = 대법 "통상임금서 상여금 제외 노사 합의 무효" ="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아니다" twitter

- 끝.